

제429회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정기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6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17일(수)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615)
2.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5)
3.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957)
4.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998)
5.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70)

상정된 안건

- | | |
|---|---|
| 1.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615) | 1 |
| 2.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5)
..... | 1 |
| 3.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957) | 2 |
| 4.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998) | 2 |
| 5.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70) | 2 |

(13시42분 개의)

○소위원장 임미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615)
2.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5)

3.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7)
4.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998)
5.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70)

○**소위원장 임미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 산불특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5건의 법률안의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다섯 차례의 회의에서 많은 쟁점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정리된 쟁점을 토대로 전문위원실에서 국회 법제실, 정부 그리고 경상북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대안의 초안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위원님들께 대안 초안을 미리 검토하실 수 있도록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전문위원으로부터 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대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충연** 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보셨기 때문에 짧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명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7장 6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보신 내용들과 관련해서, 29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시겠습니다. 29페이지가 제41조부터 제61조까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산림투자선도지구의 지정입니다. 이것도 앞에 4장에 나와 있는 피해지역 재건사업과 동일한 내용이기는 하나 별도의 장으로 분리한 이유는 산림투자선도지구가 처음으로 생긴 것이고 그다음에 조문이 한 20개 조문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장으로 분리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던 것에는 52페이지의 제3조가 없습니다. 국가등의 구상권 행사에 관한 특례 이 조항은 50페이지 제63조제2항에 보면 ‘국가등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복구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특례를 두어서 ‘제63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전 지급 또는 지출한 비용에도 적용한다’라는 이 특례를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나와 있는 입법례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대안 정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 의견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법안 제5조의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5조 2항을 잠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라는 규정과 관계돼서 신속한 시행이 중요한 만큼 지원 조직을 어디에 둘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지원 조직을 두게 되어 있는데 총리실이 이 논의 과정에 단 한차례도 참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후 지원 조직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게 두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원 조직을 행정안전부에 둔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팬참습니까?

행안부 입장은 어떠십니까? 행안부 의견 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결정해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되었고 행안부에서도 이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문구를, 이 2항의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라는 규정을 ‘지원조직을 행정안전부에 둔다’라고 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

○**이원택 위원** 행정안전부에 둘 수 있다.

○**소위원장 임미애** 둔다.

○**이달희 위원** 둔다로.

○**소위원장 임미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구정리는 저희한테 맡겨주시고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자구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소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결한 법률안이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지역 주민·중소기업인·소상공인께서 원하는 모든 내용을 담지는 못했지만 그분들께서 다시 희망을 갖고 재기해서 지역을 재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소위원회를 믿고 기다려 주신 피해지역 주민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은 가족들과 다시 힘을 모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소위원님들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 7월 3일 우리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된 지 두 달여 만에 산불 피해구제와 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십사에 매진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정부에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피해주민과 지역 재건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러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체감하는 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소위원회가 특별법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법률안의 많은 지원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정부가 통상 6개월 걸리는 대통령령 준비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관련 사항을 준비해서 현장에서 국회와 정부가 피해주민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해 준 관계 공무원과 위원회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형동 위원 마치기 전에 그냥 건의사항 비슷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예, 당부말씀 하셔도 됩니다.

○김형동 위원 다 한마디씩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마는.....

○소위원장 임미애 길어질까 봐, 대표로 간사님이 하시는 결로.

○김형동 위원 위원장님께서 대부분 정리를 해 주셨는데 내일 또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임미애 예, 10시에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오늘 또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고 행안부를 특정을 했는데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행안부장관님이 내일 본회의의 참석 대상이 아니지요?

○소위원장 임미애 저희 전체회의고요, 전체회의에 행안부장관님 오십니다.

○김형동 위원 다 오십니까?

○소위원장 임미애 행안부장관하고 산림청장.

○김형동 위원 그런 총괄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오셔 가지고, 그동안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장관님이나 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마지막 마무리에 대한 확답을 다시 한번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동안 애 많이 써 주셨고 특히 누구보다도 임미애 위원장님께서 정말 원활하게 또 유효하게 이렇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직원,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관계관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형동 박정현 서천호 이달희 이원택 임미애 허성무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충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산림청

청장 김인호
기획조정관 이종수
산림산업정책국장 박은식
산림복지국장 송준호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남경철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장 이승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 강혜영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 안창용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오성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 송용권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장 신재경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정우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기획관 김우중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김정연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 송호영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관 이종훈
경상북도
산림자원국장 조현애